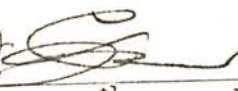




기안용지

분류기호	476	(전화번호 74-7698)	전결규정 16조 31호
분서번호	346		국장 전결사항
처리기한		기안자	결재자
시행일자	69. 2. 28	호남식	도시계획국장 
보존년한		기안일자	결재일자
		69. 2. 26	
보조	주관행정과장		
기관	주관계장		
협조	상가주관계장 		
경수참	유신조 국우총리	통계청 1969. 2. 28	발송 정서 과대장정리
제목	시민아파트 건립계획 보고 수도권 서울의 현안문제인 불량건물 일소와 병 세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기 위하여 시민아파트 2,000 동 건립 3년차 4년목표를 설정하고 2. 제1차 사업년도인 중년도 시행계획을 별첨과 같 이 수립 집행과리 보고하오니 관계부처로 자비중 보사업 추 진에 적극 차관등을 도회하여 수임을 마합니다. 함니다 첨부 시민 아파트 건립계획서 1부 끝		

69

시민아파트-트건립사업기본계획

"아파트 주택은
서민대중부터 먼저 해결"

서울특별시

62

0004

· 시민 아파트-트 건립 사업 기본 계획(안)

1. 사업목적

불량지구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아파트를 건립하여 먼저 시민대중의 주택문제를 해결 한다.

2. 사업방법

시는 후림(골조)식 아파트를 건립 담당하고 입주자 (철거 대상자)는 내부공사 일체를 담당하는 시와 입주자와의 합작에 의한 사업으로서 입주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목표

시민 아파트 2000동 (90,000 호) 건립
제1차 (69년도) 400 동 (18,000 호)

제2차 (70년도) 800 동 (36,000 호)

제3차 (71년도) 800 동 (36,000 호)

(가) 시민 대중의 주택문제를 해결키 위하여 3년
차 건립사업 목표를 위와 같이 설정 하고

(나) 제1차 (69년도) 사업분 400동 건립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 집
행키로 한다.



4 기본 계획

1) 사업 명

0006

1차년도 1100동 6 건립

4 기본 계획

1) 사업 명

서민 대중용 시민 아파트 400동 건립

(지역별 고유 명칭은 추후 결정키로 함)

2) 사업 기간

1969. 1. 4 ~ 69. 12. 30 (1년간)

전반기 (69. 1. 4 ~ 6. 30) 284동

후반기 (69. 7. 1 ~ 12. 30) 116동

계 400동

3) 소요 예산 (주택비 특별회계)

(관) 주택사업비

(항) 주택건설비

(목) 시설비

가. 예산총액 4,800,000,000 원 (동당 12,000,000 원)

나. 전반기 예산 3 408. 000. 000 (본예산 확정분)

다. 후반기예산 1. 392. 000. 000 원 (요추가예산반영)

라. 분청시공분 예산액 2, 196. 000. 000 원

마. 각구청 시공분 예산액 2, 604. 000. 000 원

4) 소요 자재

시멘트 82. 000^t (동당 205^t)

철근 24. 000^t (동당 60^t)

목재 4. 800^{m³} (동당 12^{m³})



5. 사업지구현황 및 시공침지정

구분	지구	건립동수			시공구분	대지현황			건물현황	
		전반기	후반기	계		공공유지	사유지	합계	물량 톤	신물 수
합계	17	330 284	116	446 400	본청 17 구청 10	181,764 248,576	112,569	298,333 361,333	2,537 3,207	1642 16,164
중로	청운	11 22	6	11 26	본청	44,950		44,950	215	540
	동승	20	10	30	구청	25,170		25,170	721	1,800
중	구회현	7		7	구청	1,300		1,300	270	320
중대문	낙산	30	10	40	"	14,240	33,650	47,890	2,150	5,250
성동	응봉	10 20	10 20	10 30	"	3,100	7,000	10,100	505	845
성북	성북	20	20	20	본청	67,000		67,000	70	143
	정릉	10	10 10	20	구청	16,000		16,000	151	243
서대문	금화	112 62	20	132 82	본청	22,500	1,500	24,000	1,221	2,133
	현저	5 26	17 26	22 45	구청	3,000	13,000	16,000	450	1,125
	장천	2 10	2 10	2 10	본청	5,139		5,139	160	233

-52-

29

0009

21

0656

9

62

구분	지구	건립건수			시공구분	대지현황			건물현황	
		전반기	후반기	계		국공유지	시가지	합계	불량물동	건물수
	변화	16	10	26	본청	4,100	-	4,100	360	579
	(13) 7		7							
	북이현	20	-	20	구청	6,096	-	6,096	541	1,377
마포	우우	15	-	15	4	10,000	-	10,000	229	229
	노고	10	-	10	본청	111	4,669	4,780	215	1,187
용산	산천	10	-	10	구청	3,508	80	3,508	152	385
	서부이촌	10	-	10	본청	9,800	-	9,800	742	742
영등포	본동	10	-	10	구청	8,000	700	8,700	150	307
	행문	10	10	20						
	홍능	10	2	12						
	경동		5	5						
	침지		22	22						

5. 공사시공방법 (구분) 10

0010

5. 공사 시공 방법 (구분)

가. 시답당공사

- 1) 진입로 및 부지조성공사
- 2) 플조공사(외벽도함) 및 전기배관공사
- 3) 옥외 상하수도 공사 (간선)

나. 입주자 담당공사

- 1) 건물의 간벽, 샹기등 내부공사 원채
- 2) 등별 상하수도 등사등 기타 필요한 공사

6. 공사별 소요공사비 내역

공사구분	소요공사비			비율	비고
	총공사비	동양공사비	세미양공사비		
합 .계	4,800,000,000	12,000,000	266,667	100%	
팔소릿외벽	3,600,000,000	9,000,000	200,000	51"	(상자금) 15년간상환
내 부	(2,304,000,000)	(5,760,000)	(128,000)	32"	임주자부담
전 입 로	750,000,000	1,875,000	41.667	11"	보 조
상 수 도	172,000,000	430,000	9.555	2.0"	"
하 수 도	150,000,000	375,000	8.333	2.0"	"
기 타	128,000,000	320,000	7.112	2.0"	"

ㄱ 예산성적(차금)의 주제.

ㄱ. 예산성적(자금)의 규제.

가. 융자금

이 사업자금의 동당 12,000,000원중 9,000,000원
(호당 20만원)은 15년간 연리 8%의 이자와
소정관리비를 가산하여 입주자로부터 상환받는
다 (월 2,500원정도)

(단) 입주자가 일시불로 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소정의 이자는 받지 아니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시켜준다.

나. 보조금

이 사업자금의 동당 12,000,000원중 3,000,000원
은 진입로 공사등 환경정리에 필요한 부대공
사비로서 시비보조로 처리한다.

0013

8. 아파트 구조 및 규모

가. 구조

· 콘크리트-트 라멘조 (4~6층)

나. 동당내역

건 평	면적 평	호수	층고	비 고
111 평	508 평	115	4-6 ^층	1. 각종 공용 대변기 4개 2. 각종 공용 소변기 3개 3. 승강 복도식



9. 채권보존

가. 건물에 대한 등기

건립공사가 완료되는 아와-트는 즉시 시장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한다

나. 분양계약 체결

입주자와 서술시간에는 분양계약을 체결

한다.

다. 소유권 이전

용자금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는 후수이다

입주자 개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조치한다

10. 입주대상 순위 및 조합구성.

가.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1) 자진철거 이주한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
- 2) 자진철거후 임시 수용당한 사업지구내 건물 소유자
- 3) 사업지구내 적법재산 (토지건물) 소유자로서 시와 협의된 자
- 4) 사업지 인근의 불량건물주로서 당시의 지시에 응하여 지진 철거한다.
- 5) 모범보안 경찰관 (동남 / 세대).
- 6) 기타 시에서 인정할 자
- 7) 시가 지정할 입주권자라 할지라도 입주권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나. 조합구성

0016

16

지미 사

ㄱ) 시가 지정한 입주권자라 할지라도 입수권

리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나. 조합구성

1) 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현지 주민 상호간의 유기적 협동을 위하여 아파트 동별로

관리 조합을 시민 아파트 관리조합 표준 규

약에 의거 구성토록 조치한다.

2) 등(棟)장을 통(統)장으로 임명 조치한다.

11. 철거민 및 임시 이주방법

가. 사업지구내의 주민은 자진철거 임시 이주토록 계몽 조치한다.

나. 자진철거를 이행하나 임시 거주처 마련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아파트 공사 완공시까지 적당한 장소를 마련(천막) 수용토록 한다.

다. 사업지 거주인으로서 자진철거 등 본 사업 시행의 불응하는 자는 철거후 이주토록 조치한다.



12. 사업용지(用地)에 대한 처리

가. 국공유지인 경우

0018

12. 사업용지(用地)에 대한 처리

가. 국공유지인 경우

본 사업을 선행 실시하고 사후 처리케 한다.

(당시가 양여 받거나 입주자가 직접 불하 받도록 주선)

나. 사유지인 경우

1) 사업지 전체가 사유지인 때는 해당지역의 불양건을 철거 또는 도시계획의 재검토(공원용지 해제 등)로 필요한 용지만을 당시에 기부 채납등을 협의 하여 사업 추진토록 한다.

2) 사업지내 일부분의 사유재산 (대지 및

적법 건물)이 있을 때는 소유주와 협의
아파-트 입주권과 상쇄(相殺)케 하는
방법 등을 강구 조치토록 한다.

13.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복지 시설설치

가. 본 아파-트 건물 지하층에 대한 생활시장
설치방안 및 아파-트 단지내에 시설을 요하
는 주민복지시설 (공중욕탕, 공원) 등에 대한
설치요령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방침 결정키
로 한다.

14. 사업추진 업무분담

20

0020

본	청	담당부서	구	청	담당부서
---	---	------	---	---	------

14. 사업 추진 업무분담

본 청	담당부서	구 청	담당부서
1.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계획승인(구청분)	주력행정과 주력건설과	1. 관내사업지에 대한 대지 성분 조사 및 세부조사 측량	건축과 토목과
2. 예산집행 및 자금 수납	주력행정과	2. 관내사업지구 의 불량건물 조사 및 정리	건축과
3. 상환계획 및 채권보존 확보	주력행정과	3. 관내 사업지구 주민에 대한 PR 전개.	건축과 총무과
4. 사업용 관급자 재 일괄확보 및 수급	주력행정과	4. 관내 사업지구 내 사유지주와 의 협의	건축과
5. 구청 시공분 설계검토 및 기술지도 감독	주력건설과	5. 구청 시공지구	

본	청	담당부서	본	청	담당부서
6.	표준설계 작성 시달	주력건설과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7.	기 타	주력 행정과 건설과	6. 관내 사업지 지구차의 입주 대상자 선정 및 조합구성 (동(禱) 적부 완비)	건축과 총무과	
			7. 구청담당공사 의 설계 및 감독	건축과	
			8. 입주자 자담 공사의 지도 감독		